「접경지역 생산 농·축·수산물의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·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1. 개정 이유

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규칙 현행화 및 조문 내용 명확화

2.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 개정내용
제2장 접경지역 농·축·수산물 품목 지정 및 관리	▪ **제3조(품목지정), 제5조(지정품목 우선 납품), 제7조(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)** →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
제3장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	▪ **제8조(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), 제11조(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), 제12조(원품사용업체 우대)** → 소관 부처 변경 ▪ **제10조(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)** →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 ▪ **제13조(재검토 기한)** → 재검토 기한 변경
별지	▪ **제1호~제5호, 제8호** → 유동성 및 명확성을 위한 연도 표기 방식 변경 ▪ **제9호, 제10호** → 고시 본문 개정에 따른 변경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